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25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6. 7. 6(수)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25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6년 7월 6(수) 07:30
- 장 소 : 달개비(중구 정동)
- 재적이사 : 11명, 재적감사 : 2명
- 출석이사 : 8명
- 출석감사 : 미참석

○○○ 간사가 제25회 임시이사회의 성원을 보고하다.

○○○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간사가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 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2016년 하반기 이사회 운영계획 보고
3. 2016년 사무국장 채용 보고
4. 2016년 상반기 사업추진 보고
5.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보고(안)
6. 상반기 장학재단 운영사항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128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은 제128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간사가 제128호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중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게 하여 이사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 고자 정관 제31조(이사회의 소집)를 개정하고자 말하다. 이사회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관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개정사항을 설명하다 기존 정관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내용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안건인 경우 적어도 7일 전, 예산 및 주요사업계획안건일 경우 적어도 15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8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29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은 제129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간사가 제129호 안건과 관련하여 제128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건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안건과 연계된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관개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의사록 규정 개정의 ②항을 신설하고자함을 이사회 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개정 내용은 이사회운영규정 제5조 이사회의 소집 ①항 「이사회의 소집은 일반안건인 경우 회의개최 7일전, 예산 및 주요 사업계획안건인 경우 15일전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설명하다. 제20조 의사록의 규정 개정은 새로이 신설하는 항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여 재단 운영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도록 이사회 회의록을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자 하는 규정이 신설됨을 설명하다. 개정 내용은 이사회운영규정 제20조 의사록 ②항 「작성된 회의록은 이사회 임원의 열람을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재단 홈페이지에 이사회 개최 후 14일 이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의 결재는 위임가능하다.」라고 설명 하다.

○○○이 외부적으로 회의록 공개 시 간단명료하게 심의안건이 무엇인지, 원안의결과 수정의결을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요청하다.

○○○이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9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130호 복무규정(관련 보수규정 포함)개정에 관한 건

○○○은 제130호 복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 간사가 제10조 시간외 근무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한다. 현행의 복무규정상으로는 시간외 근무 세부적인 항목들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부가급여 기준표에만 시간외 근무의 세부적인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어 제10조 시간외 근무 ①항에 「이사장이 업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시간외 근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자함을 설명하다. 또한 기존 규정 ②항의 경우에는 「이사장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부여 할 수 있게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체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또한 ○○○이 복무규정 제10조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되는 2급의 경우는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되는 근로자로 기존의 보수규정의 부가급여 기준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하고 말하다.

○○○ 간사가 복무규정 제10조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보수규정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하다. 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임원 및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상위법을 보면 관리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재단의 현행 규정을 보면 2급 이하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을 줄 수 있다 라고 운영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규정의 부가급여 지급기준표를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다. 이에 보수규정 <별표2>『시간외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을 기존 사무국장(2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조정』하고자 함을 말하다.

○○○이 복무규정(관련 보수규정 포함)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0호 복무규정(관련 보수규정 포함)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6년 7월 6일